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 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 
2024. 9. 3(화) 10:00

## 제25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 
조례안  
(복지가족국 아동청소년과 소관)



복지건설위원회  
전문위원 추병수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## 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590호
- 나. 제 출 자 : 도병두 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4. 8. 22.
- 라. 회부일자 : 2024. 8. 22.

## 2. 제안이유

청소년기에 임신출산양육을 경험하면서 학업과 취업을 동시에 준비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, 청소년부모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존중받으며 성장·자립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 및 청소년부모의 책무(안 제3조 및 제4조)
- 다. 지원대상(안 제6조)
- 라.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(안 제7조 및 제8조)
- 마. 지원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(안 제9조 및 제10조)
- 바. 중복지원의 제한 등(안 제12조)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8조,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18조의2 ~ 제18조의5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예산조치
- 다. 입법예고 : 2024. 8. 23. ~ 2024. 8. 30.

## 5. 검토의견

### 가. 제정 이유

본 제정안은 청소년부모로 이루어진 가정의 어려운 생활 환경을 지원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의원 발의되었으며 총 1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### 나. 주요 내용

#### 1)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
- “청소년부모”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으로 정의함
- “청소년부모 가정”이란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 등의 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부(법률혼 및 사실혼 모두 포함)로 이뤄진 가정으로 함

#### 2) 구청장의 책무 및 청소년부모의 책무(안 제3조 및 제4조)

- 구청장의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마련의 책무를 규정함
- 청소년부모의 학업과 취업 및 자녀 양육과 교육을 위한 책무를 규정함

#### 3) 지원대상(안 제6조)

-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청소년부모(법률혼 및 사실혼 포함)와 그 자녀로 함

#### 4)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(안 제7조 및 제8조)

-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해 5년마다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

#### 5) 지원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(안 제9조 및 제10조)

- 「모자보건법」에 따른 청소년 임신부에 대한 임신·출산 지원
-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18조의2~제18조의5를 적용하여 지원사업을 규정함

#### 6) 중복지원의 제한 등(안 제12조)

□ **금천구 청소년부모 대상자 현황**

- 청소년부모 가정 수 : 1세대 / 3명(시흥 3동)

※ 독산2동 1세대, 3명(2024. 7. 29. 신청 및 조사중)

□ **지원실적**

(2024. 8. 기준)

구 분		‘24년	‘23년	‘22년 7월~	비 고
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(국·시비)	집행내역	12명	47명	36명	누계
	집행액	3,000천원	9,400천원	7,200천원	
서울형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(전액시비)	집행내역	12명	19명	-	‘23년 7월부터 시행
	집행액	2,400천원	3,800천원	-	

**다. 검토 의견**

- 청소년 한부모는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나, 자녀를 함께 양육하는 청소년부모는 학업 중단, 빈곤한 양육환경 등 열악한 상황에도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「청소년 복지 지원법」(2021. 3. 23)이 개정됨.
- 상위법령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에 따라 청소년기 임신과 출산으로 학업과 취업, 자녀 양육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부모들에게 관심과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며 본 조례안은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# 관계법령

## □ 「청소년 기본법」

[시행 2024. 3. 26.] [법률 제20420호, 2024. 3. 26., 일부개정]

**제8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**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.
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한다.

## □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

[시행 2024. 4. 25.] [법률 제19761호, 2023. 10. 24., 일부개정]

**제18조의2(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)**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.

1.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
2. 「지역보건법」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방문건강관리사업 서비스
3. 교육·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
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 서비스

② 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,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**제18조의3(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)**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에게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은 생활지원, 의료지원, 주거지원,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,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**제18조의4(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)**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부모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 및 교육비 지원 또는 검정고시 지원
2.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
3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8조에 따른 교육 지원
4. 그 밖에 청소년부모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의 학업과 양육의 병행을 위하여 그 자녀가 청소년부모가 속한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.

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부모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,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**제18조의5(청소년부모에 대한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)**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
2.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
3. 직업소개 및 관리
4. 그 밖에 청소년부모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·기술 및 태도를 습득·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